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218550(본소), 2015가단61372(반소) 판결

[보증금반환 · 청구이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B

피고(반소원고)C

변론 종결 2016. 6. 21.

판결 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전유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이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를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반소 :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다우 2013. 3. 13. 작성 제2013년 증서 제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반소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D는 2013. 4. 3. 피고(반소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61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3. 4. 22. D에게서 위 명령에 의하여 D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12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D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5. 15.경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20,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위 명령에 위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는 추심채권자 D에게서 추심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므로, 위 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한을 주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추심명령이 부여한 추심권한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서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한을 양도받았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D에게서 D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D는 피고(반소원고)의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을 기회로 피고(반소원고)의 아들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반소원고)를 기망하고 공갈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도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다우 2013. 3. 13. 작성 제2013년 증서 제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에 대한 전면적인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권원상 채권자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자는 D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공정증서상 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자나 그 승계인임이 전제가 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남기주

별지